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12조(시행)에 의거하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공포한다.

2017년 3월 27일

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(서명)  


규정 제 167 호

###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개정

정선군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보수규정에 의한 봉급, 직급보조비, 운영수당,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임·직원 중 이사장의 경우 장기근속 수당을 제외하여 산정한다”를 “임원은 보수규정상 봉급, 관리업무수당, 운영수당, 명절휴가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, 8급 이상 직원은 봉급, 직급보조비, 운영수당,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직원의 경우 전년도 근무평정등급별 가울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”를 “직원의 경우 정책인상률 또는 가울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개인의 근무실적·업무성과 및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”를 “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및 자체평가급과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평가급을 말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급여로서”를 “급여로서 임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을 말하며, 직원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기본연봉)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.

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성과연봉) ①임원의 성과연봉은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평가급을 말하며, 직원의 성과연봉은 매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평가급(자체평가급 포함)과 내부평가급을 말한다.

② 내부평가급의 재원은 보수규정의 경영활동비, 명절휴가비 재원을 전환·활용한다.

③ 성과연봉은 총 연봉 대비 비중이 15%이상 되도록 하고, 매년 내부평가급에 임금인상률을 곱하여 재원을 충당한다.

제16조의1의 제목 중 “직원”을 “임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과연봉은”을 “직원의 인센티브평가급(자체평가급 포함)은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고, 직원의 내부평가급은 근무평정등급에 따라 “별표5”를 기준으로 지급하며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성과연봉”을 “인센티브평가급(자체평가급 포함)”으로 “별표 5”를 “별표 6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임원의 성과연봉 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및 군수가 결정한 지급율에 의거하여 지급하며 다음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

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고, 별표 5를 별첨의 별표 5와 같이 신설하며, 별표 6(종전의 별표 5)을 별첨의 별표 6과 같이 한다.

부 칙 (2017년 3월 27일)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5]

내부평가급의 산정

등급	S	A	B	C	D
배분 비율	10%	15%	50%	15%	10%
지급액	n	n-5%p	n-10%p	n-15%p	n-20%p

주) n은 S등급시 내부평가급 지급율, 세부기준은 이사장 방침에 따른다.

[별표6]

성과연봉 차등지급 기준(제16조의 1 관련)

평가등급	S	A	B	C	D
배분비율	10%	15%	50%	15%	10%
지급율	$\beta$	$\beta-15\%p$	$\beta-25\%p$	$\beta-35\%p$	$\beta-50\%p$

주)  $\beta$ 는 S등급시 성과연봉 지급율, 세부기준은 이사장 방침에 의한다.